

##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

(앞쪽)

**【출원인】**

**【성명(명칭)】**

**【특허고객번호】**

**【대리인】**

**【성명(명칭)】**

**【대리인번호】**

( **【포괄위임등록번호】** )

**【사건의 표시】**

**【출원번호】**

( **【디자인의 일련번호】** )

**【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】**

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.

출원인(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**【수수료】** 원 (기재방법 제4호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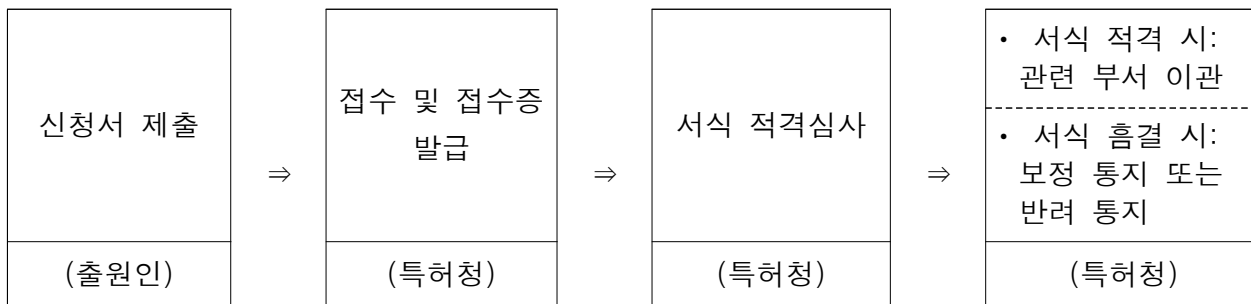
( **【수수료 자동납부번호】** )

**【첨부서류】**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(기재방법 제6호 참조)

### 1.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

이 서식은 출원인이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(관련 규정: 「디자인보호법」 제52조).

### 2. 처리절차



## ※ 기재방법

### 1. 【출원인】란

가.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

- 1) 【성명(명칭)】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(또는 법인의 명칭)을 적습니다.
- 2) 제출인이 「디자인보호법」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(이하 “국제디자인등록출원”이라 한다) 출원인인 경우에는 【성명(명칭)】란에 「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」 제1조(viii)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(또는 법인의 명칭)을 적습니다.
- 3)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【성명(명칭)】란은 성명(또는 법인의 명칭)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, 【성명(명칭)】란의 다음 줄에 【성명(명칭)의 영문 표기】란을 만들어 「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」 제1조(viii)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(또는 법인의 명칭)을 적습니다.

[예] 【제출인】

【성명(명칭)】 케네디 존 에프

【성명(명칭)의 영문 표기】 KENNEDY John F.

【특허고객번호】 0-0000-000000-0

- 4) 【특허고객번호】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.

나.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

- 1) 【출원인】란의 다음 행에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서식(특허고객번호부여신

청서)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**【성명(명칭)의 국문표기】** 및 **【성명(명칭)의 영문표기】**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.

2)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,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**【첨부서류】** 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**【출원인 ○○○의 인감(서명)】** 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×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(서명란)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.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**【출원인 ○○○의 인감(서명)】** 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.

#### 다. 공통

1) **【사건과의 관계】** 란은 “출원인”, “등록권리자”, “제3자”, “청구인”, “피청구인”, “이의신청인”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.

2) 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**【출원인】** 란의 다음 줄에 **【법정대리인】** 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**【성명】** 및 **【특허고객번호】** 를 적고,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.

[예] **【출원인】**

**【법정대리인】**

**【성명】**

**【특허고객번호】**

#### 2. **【대리인】** 란

가.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(또는 법인의 명칭)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.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(유한)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**【대리인번호】** 란의 다음 줄에 **【지정된 변리사】** 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.

[예] **【대리인】**

**【성명(명칭)】** 특허법인 ○○○○

**【대리인번호】** (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)

**【지정된 변리사】** 변리사 ○○○, 변리사 ○○○

나.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**【대리인번호】** 란의 다음 줄에 **【포괄위임등록번호】** 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,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**【포괄위임등록번호】** 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.

[예] **【대리인】**

**【성명(명칭)】**

**【대리인번호】**

**【포괄위임등록번호】**

**【포괄위임등록번호】**

다.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**【대리인번호】**란의 다음 줄에 **【특기사항】**란을 만들어 적습니다.

[예] **【대리인번호】**

**【특기사항】** 제출인 ○○○의 대리인

라.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**【첨부서류】**란에 “위임장”이라 적고,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,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서식(위임장)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.

3. **【사건의 표시】**란

가. **【출원번호】**란에는 해당 건의 출원번호(예: 30-2014-1234567)를 적습니다.

나. **【디자인의 일련번호】**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(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 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)된 디자인 중 일부 일련번호의 디자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.

[예] **【사건의 표시】**

**【출원번호】** 30-2014-1234567

**【디자인의 일련번호】** M002, M005, M009

다. **【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】**란에는 출원서의 **【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】**란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습니다. 다만, 복수디자인등록출원(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)된 디자인 중 전부 또는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중 가장 앞선 일련번호 디자인의 물품명을 적습니다.

[예] **【사건의 표시】**

**【출원번호】** 30-2014-1234567

**【디자인의 일련번호】** M002, M005, M009

**【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】** 신사복 등

4. **【수수료】**란

**【수수료】**란은 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」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공개건수와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금액을 적습니다.

5. **【수수료 자동납부번호】**란

사전에 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」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**【수수료 자동납부번호】**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.

6. **【첨부서류】**란

가. 서식은 출원인(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)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

또는 날인해야 하며, 2인 이상의 출원인(대리인)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.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[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,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(유한)인 경우에는 법인등록]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,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(경정),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나. 첨부서류 중 「전자정부법」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(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)에 해당하는 서류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, 출원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,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.

[예]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[상호: ○○○, 법인등록번호: 000000-0000000]

다. 첨부서류 중 「전자정부법」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(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)에 해당하는 서류는 출원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.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,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[예 1]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 1통

[성명: ○○○, 주민등록번호: 000000-0000000]

[예 2]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

[성명: ○○○, 주민등록번호: 000000-0000000, 사업자등록번호: 000-00-00000]

[예 3]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 1통

[성명: ○○○, 주민등록번호: 000000-0000000, 보훈번호: 000-000000]

라. 서류의 원용

1)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(「디자인보호법」 제8조, 제36조제1항,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)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,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예] 위임장 1통 [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]

【서류명】 디자인등록출원서

【출원번호】 30-2010-1234567

2)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(「디자인보호법」 제8조, 제36조제1항,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 합니다)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[예] 위임장 1통 [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]

【서류명】 심판청구서

【심판번호】 2010-당-123456

마.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(스캐닝)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

- 1)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 (300dpi 권장)의 흑백 TIFF(Tagged Image File Format)파일이어야 합니다.
- 2)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,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(300dpi 권장)의 JPEG(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)파일이어야 합니다.

바. 첨부서류를 PDF(Portable Document Format)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#### 7. 작성 시 유의사항

서식은 출원인(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)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 인해야 하며, 2인 이상의 출원인(대리인)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 인해야 합니다.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[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,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(유한)인 경우에는 법인등록]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,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(경정),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